

## 소규모 합병 공고

(주)오뚜기는 오뚜기삼화식품(주)와 2016년 12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(주)오뚜기가 오뚜기삼화식품(주)를 흡수합병 함.
2. 합병비율 : (주)오뚜기:오뚜기삼화식품(주)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  - 가. 상호 : 오뚜기삼화식품(주)
  - 나. 본사 소재지 :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관촉로58번길 138 (성평리)
4. 합병기일 : 2017년 2월 16일
5. (주)오뚜기와 오뚜기삼화식품(주)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- 가. 행사절차 : 2016년 1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- 나. 기간 : 2016년 12월 29일 ~ 2017년 1월 12일
 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- 1) 명부주주 : 2017년 1월 12까지 (주)오뚜기 재경팀에 제출(우편 또는 팩스)  
\*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오뚜기센터 7층 (주)오뚜기 재경팀 주식담당자 앞  
(Tel : 02-2010-0723, Fax : 02-2010-0799)
    - 2) 실질주주 : 2017년 1월 9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  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###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
(주)오뚜기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오뚜기와 오뚜기삼화식품(주)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주 주 명
소유주식 종류	소유주식 수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 주민등록 번호(앞 6자리 기재) :

주 소 :

2016년 12월 29일

주식회사 오뚜기 대표이사 이 강 훈